

# 대항표현이란 무엇인가

유민석(서울시립대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dreamsnail@naver.com

본 발제는 대항표현이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혐오표현과 대항표현은 모두 일종의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능숙한 언어 사용자들은 혐오표현과 대항표현의 다양한 사례들을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대항표현에 어떤 공통된 본질적인 특성은 없지만, 여러 가지 유형의 중첩되고 교차하는 대항표현‘들’이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본 발제는 대항표현의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1. 개인적 대항표현 2. 집단적 대항표현, 그리고 3. 국가 중심적 대항표현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한계를 간략하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혐오표현: 가족 유사성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TV 토론회에서 “자기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퀴어문화축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sup>1)</sup> 이 표현은 혐오표현일까?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안철수 후보자의 표현이 성소수자를 소외시키는 혐오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예비후보인 이연주 의원은 해당 후보의 발언을 지지하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동성애(행위)를 반대할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반대 의사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수자 인권을 빙자한 파시즘에 다름 아니다”, “성소수자의 집회의 자유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권리까지 존중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굳이 집회를 한다면서 시민들에게 동성애 성문화를 적나라하게 강요할 권리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등의 의사를 밝혔다.<sup>2)</sup>

우리가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답변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이연주 의원의 표현 역시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애석하게도 “‘혐오표현’이라는 용어는 애매하다. 즉 그것은 의미의 가족을 지칭하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확한 정의는 없다(Brown, 2017: 562).” 무엇보다 “‘혐오표현’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1) “안철수 ‘퀴어 축제 거부할 권리’ 주장…‘혐오 조장’ 논란 여진”, <한겨레> 2021년 2월 19일자.

2) “이연주도 안철수 ‘소신’에 지원사격…‘동성애 반대 존중돼야’”, <한국경제> 2021년 2월 21일자.

무제한적인 유형의 맥락, 표현 내용, 감정, 느낌 태도, 화자, 활동들의 셀 수 없는 조합에 적용될 수 있다(Brown, 2017: 563).” “‘혐오표현’은 체계적으로 모호하다. 다시 말해 그것은 서로 다른 의미들의 복수성을 전달”(Brown, 2017: 564)한다.

그렇다면 혐오표현은 주관적인 개념이라거나, 존재하지 않는 개념일 것일까? 그렇지 않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 개념은 혐오표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하나의 본질적인 공통적인 특징에 의해 연결된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어떤 특징도 모든 것에 공통적이지 않은 일련의 겹치는 유사성(similarities)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Wittgenstein, 1953).

‘놀이’라는 개념이 서로 다른 놀이들이 중첩되는 가족을 이루고 있듯이, 혐오표현 역시 마찬가지다. 혐오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성, 인종, 피부색,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욕하거나 낙인찍기 위해 의도되는 “중첩되고 교직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조각보(patchwork)”<sup>3)</sup>(Brown, 2017: 604)로서, “모욕하거나 비하하거나 폄훼하거나 부정적으로 정형화하거나 인종이나 종교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이나 장애에 기반하여 사람이나 사람의 집단을 향한 증오, 차별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또는 기타 표현 행위”<sup>4)</sup> 등을 총칭한다. 다시 말해 “혐오표현 개념은 비트겐슈타인이 ‘가족 유사성’으로 일컬었던 개념”(Brown, 2017: 563)인 것이다.

## 2. 대항표현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의 TV 토론회에서의 성소수자 혐오표현 이후, 많은 이들이 분노했고 즉각 대응했다. 예컨대 상대 후보자인 금태섭 전 의원은 안철수 후보자의 발언을 듣고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었더니 우리 사회가 차별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다.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고<sup>5)</sup>, 이후 인터뷰에서는 안 대표의 해당 발언을 “혐오, 차별 발언”으로 규정했으며, “안 대표가 성소수자들이 1년에 한 번 축제하는 걸 보통 사람 눈에 띄는 데 가서 하지 말라며 안 볼 권리를 얘기하는데, 혐오 차별과 다른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sup>6)</sup>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역시 “안 후보의 인권감수성이 개탄스럽다”면서 “성소수자 시민에 대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서울시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마치 선택인 것처럼

3) Alexander Brown, “What is hate speech? Part 2: Family resemblances”, *Law and Philosophy* 36(5), 2017, p. 604.

4) Alexander Brown, “What is hate speech? Part 2: Family resemblances”, *Law and Philosophy* 36.5 (2017), pp. 564-565.

5) “안철수 “文? 문도리코” 금태섭 “퀴어 축제 반대 실망”“, <조선일보> 2021년 2월 21일자.

6) “금태섭 “퀴어축제 안 볼 권리? 안철수 얘기는 혐오 발언”“, <한국일보> 2021년 2월 21일자.

럼 발언한 것에 대해 각성하고 상처입은 성수자들에게 사과하라”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의 논평은 안 후보를 “대한민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왜 도심에서 열려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절망적 발언”이라고 비판했으며, “퀴어문화축제가 축제의 고유역할을 넘어 운동성을 지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sup>7)</sup>

<한겨레신문>은 “퀴어 축제, 도시 외곽서 열린다”는 안철수의 발언은 틀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샌프란시스코·토론토·타이베이 등 해외의 퀴어문화축제들이 모두 주요 도시에서 열린다는 팩트체크 보도를 하였다.<sup>8)</sup>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이자 혐오표현 연구자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서 “저는 안철수의 발언이 듣기 싫은데, 저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런 것들을 거부할 권리도 존중’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방송이나 시내 중심에 출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뿐입니다.”<sup>9)</sup> 등 재치있는 패러디를 통해 안철수의 혐오표현을 전유하고 비틀었다.

이 모든 사례들은 대항표현‘들’의 가족 구성원들이다. 대항표현은 다양한 방식과 수단, 인물, 장소에서 실행된다. 혐오표현이 사적인 환경이나 공적인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 또는 일반 시민이, 블루 칼라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항표현 역시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집단이 할 수도 있으며, 정치인이나 국가가 할 수도 있는 것이다(Brettschneider, 2016; Lepoutre, 2017).

## 2.1. 개인적 대항표현

혐오표현은 개인이 할 수 있다. 혐오표현의 수신자는 원본 혐오표현에 기생하여 전유하거나 또는 화자가 미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허를 찔러서 대응할 수 있다 (Butler, 1997; Baez, 2013). 문화비평가 멜라니 조이 맥너턴(Melanie Joy McNaughton)은 「반란적인 여성성Insurrectionary Womanliness」이라는 논문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대항표현의 사례를 들려준다.

체육관에서의 반란적인 표현의 사례를 들자면, 남성 트레이닝 파트너가 펀치의 힘의 부족에 대해 또 다른 한 남성을 몰아세울 때(보통 동지애의 정신에서), 그들은 그에게 “계집애처럼 때린다(hits like a girl)”고 말함으로써 그의 파트너를 비하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의 자극을 우연히 듣게 될 때의 나의 응수는 남

7) “안철수 “퀴어축제, 노출 문제 지적한 것”...정의당 “절망적””, <동아닷컴> 2021년 2월 19일자.

8) ““퀴어 축제, 도시 외곽서 열린다”는 안철수 발언은 틀렸다”, <한겨레> 2021년 2월 21일자.

9) 홍성수 교수 개인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sungsooh>). 검색일: 2021년 2월 22일)

자들을 초청해서 “계집애한테 맞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다(McNaughton 2012:6).

정치학자 캐서린 겔버 역시 다양한 개인적 대항표현의 방법들을 제안한다. 예컨대 “야이 바보야, 멍청아”라는 혐오표현에 대해서 첫째로 사실성 여부에 문제제기함으로써 맞받아칠 수 있다. “난 지난 모든 시험에서 A+를 받았거든?”이라고 맞받아치는 식이다.

둘째는 혐오표현이 지지하는 차별이라는 규범이나 가치의 정당성을 거부하고, 반차별이라는 규범 및 가치에 의지하여 되받아치는 방식이 있다. 이를테면 “야이 바보야, 멍청아”라는 혐오표현에 대해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응수하는 식이다.

셋째는 화자의 내면적인 주관 세계, 즉 진정성에 호소함으로써 대응하는 방법이다. “야이 바보야, 멍청아”라는 혐오표현에 대해 “나는 니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라고 호소하는 식이다(Gelber, 2002).

이런 개인적 대항표현의 한계는 바로 개인 혼자서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대항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혐오표현에 대한 해법으로 개인적인 대항표현을 제시하는 것은 혐오표현의 피해자들에게 ‘맞대응하라’는 부담을 추가로 지우기 때문에 불공정하다(Lepoutre, 2017). 피해자에게 그저 더 많은 말을 하라고 권유하는건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혐오표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응하지 않고 그런 말을 그냥 무시한다. 이유는 다양하다. 일부는 대응하고 나서의 결과가 두려워서 무시하고, 일부는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무시하며, 일부는 말싸움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혐오발화자들을 일깨워 주는 건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시한다(Nielsen, 2012).

개인적인 대항표현에는 한계가 있으며, 무조건적인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즉 “대항표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혐오표현이 개인의 사적 실천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혐오표현으로 고통받는 당사자 개인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홍성수, 2018: 223) 안 된다.

## 2.2. 집단적 대항표현

따라서 혐오표현은 그 자리에서 개인이 홀로 감내하여 응수할 필요는 없으며, 보다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필요한 것은 혐오표현의

표적 집단이 그 자리에서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그들의 혐오적인 견해에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Lepoutre, 2017).

예컨대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혐오하신다’라는 동성애 혐오 사이트인에 대항한 온라인 대항 사이트의 사례는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대항표현의 사례들을 보여 준다. 동성애 혐오로 악명 높은 침례교 목사인 프레드 펠프스(Fred Phelps)가 만든 ‘godhatesfags.com(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신다)’라는 사이트는,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신다는 것을 성경 구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다양한 가짜뉴스들로 가득찬 혐오 사이트였다.

이에 쿼어 운동가들은 godhatesfags.com을 풍자하는 ‘godhatesfigs.com(하나님은 무화과를 혐오하신다)’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무화과를 혐오하신다는 주장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 목록을 열거했다. ‘godlovesfags.com(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이트를 통해 펠프스 목사의 도메인 이름을 훔치는 데 성공해 ‘godhatesfags.com’의 모든 방문자를 72시간 동안 해당 사이트로 오게끔 만들기도 했다. ‘godhatesphelps.com(하나님은 펠프스를 혐오하신다)’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사이트도 등장했다. 여기에서는 펠프스 목사의 터무니없는 주장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펠프스의 메시지를 패러디하고 반복했다(Eichhorn, 2001).

그런 장기적이고 집단적인 대항표현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성명서, 리플렛, 청원, 집회, 반론보도요청, 전단지, 칼럼 같은 다양한 형식들이 모두 대항표현이 될 수도 있다.

혐오표현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생했다면, 피해자 그리고/또는 피해자 집단은 인근 지역 내에서 지역신문을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만일 어떤 혐오표현이 직장과 같은 좀 더 공적인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예비 대응화자는 그 직장 내에서 반인종차별 프로그램의 개발을 도울 수 있다(Gelber, 2002: 123).

집단적인 대항표현에도 한계가 있기는 하다. 혐오표현의 표적 집단은 일반적으로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혐오표현의 해악을 막는 데 필요한 권위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Langton, 1993). 실제로 혐오표현을 주로 듣는 집단은 이미 정치적인 조건과 차별적인 관습에 있어서 패배하기 쉬운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집단을 향해 집단적인 대항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다(Hornsby, 2003).

즉, “당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혐오표현의 메시

지에 단순히 “아니오, 우리는 환영받습니다!”라고 말해서는 대항할 수가 없다 (Lepoutre, 2017). 집단적으로 혐오표현에 대응한다 하더라도 중과부적衆寡不敵인 셈이다.

### 2.3. 국가 중심 대항표현

이에 권위가 부족한 피해자 집단을 대신하여 권위를 가진 공직자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화자로 나설 수 있다. 이렇게 혐오표현의 피해자 개인이나 표적 집단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는 보다 권위 있는 공직자나 제3자가 주체가 되는 대항표현을 시민 사회의 대항표현과 구별하여, ‘국가 중심 대항표현(state-based counter speech)’이라고 한다. 국가 중심 대항표현은 대항표현의 당사자가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그를 대표하는 보다 권위를 갖는 제3자(국가나 시민단체)가 대항표현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Brettschneider, 2012; Lepoutre, 2017).

예컨대 국가 고위 공직자가 차별이나 혐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직접 분명히 내주거나, 아니면 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혐오에 맞서 싸우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시민단체에 지원을 제공해주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런 국가 중심 대항표현은 개인적인 대항표현이 가지기 쉬운 권위의 부재나 추가적인 이중 부담 같은 부작용들을 최소화시켜 준다(Brettschneider, 2012).

#### 2.3.1. 직접적 국가 중심 대항표현

국가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인간 존엄성의 이상을 단언하는 방식으로 혐오표현에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해야 한다. 국가만이 말대꾸를 위한 여러 도구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 중심의 말대꾸는 형식적인 공론장에서의 공적 선언, 공공장소 지명, 공휴일 제정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가능하다. 나아가 공직자들은 공공연한 혐오표현의 특정 사례를 비난함으로써 직접 말대꾸를 할 수 있다(Brettschneider 2012; Lepoutre 2017).

시민 개개인들에 비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나 정부기관, 대통령이 혐오의 정치를 직접적으로 비난한 사례는 혐오표현의 피해자들도 존엄하고 동등한 시민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국가가 그들의 편에 서 있다는 강한 확신을 제공해 준다. 국가 중심 대항표현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사회에 보낸다.

국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그런 말을 들어야 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불행히도 일부 개인들이 여전히 이런 말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대신하여** 우리는 당신 곁에 서서 확

신을 줄 것이고, 당신이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이며, 그들이 말한 것은 공허한 위협으로 그치게 할 것을 보장하겠습니다(Brettschneider, 2012; 110-111).’

#### 2.2.4. 간접적 국가 중심 대항표현

보다 간접적인 대응 방식도 존재한다. 크게 2가지 방식의 간접적 국가 중심 대항표현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인권단체와 같은 민간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단체의 기능에는 혐오표현의 발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는 혐오표현이 시도하는 해악을 차단하는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함으로써 혐오표현의 표적 집단에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사건 같은 역사적 사건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민주적 가치에 노출시키는 공교육 과정을 통해 혐오스러운 견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Brettschneider, 2012).

국가 중심 대항표현은 시민사회의 대항표현이 갖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한다. 첫째, 이런 해결책은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되받아쳐 말하는 것과 조화되기는 하지만, 대응하도록 요구받는 주된 대상은 피해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 작업은 주로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와 같은 제3자에게 위임된다. 둘째, 국가공무원은 많은 시민 개개인과 달리, 존엄성에 대한 공적 확신을 공격하려는 혐오표현의 시도에 권위를 갖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Brettschneider, 2012). 그래서 국가 중심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의 해악(인간 존엄성에 대한 확신의 파괴)을 막을 수 있다. “끔찍한 견해가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각종 미디어에] 방영될 때, 공무원이 그들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도 존엄성에 대한 공적인 확신을 유지하기에 충분”(Lepoutre, 2017: 861)한 것이다.

## 참고문헌

-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어크로스, 2018.
- Baez, Benjamin. *Affirmative Action, Hate Speech, and Tenure: Narratives About Race and Law in the Academy*. Routledge, 2013.
- Brettschneider, Corey Lang. *When the State Speaks, What Should It Say?: How Democracies Can Protect Expression and Promote Equal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 Butler, Judith.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Psychology Press, 1997(국역: 주디스 버틀러, 『혐오 발언』, 유민석 옮김, 알렙, 2016).
- Brown, Alexander. "What is hate speech? Part 2: Family resemblances." *Law and Philosophy* 36.5 (2017): 561-613.
- Eichhorn, Kate. "Re-in/citing linguistic injuries: speech acts, cyberhate, and the spatial and temporal character of networked environments.", *Computers and Composition* 18.3 (2001): 293-298
- Gelber, Katharine. *Speaking back: The free speech versus hate speech debate*. Vol. 1. John Benjamins Publishing, 2002(국역: 캐서린 겔버, 『말대꾸』. 에디투스, 2019)
- Lepoutre, Maxime. "Hate speech in public discourse: A pessimistic defense of counterspeech." *Social Theory and Practice* 43.4 (2017): 851-883
- McNaughton, Melanie Joy. "Insurrectionary Womanliness: Gender and the (Boxing) Ring." *Qualitative Report* 17 (2012): 33.
- Nielsen, Laura Beth. "Power in public: Reactions, responses, and resistance to offensive public speech." *Speech and harm: Controversies over free speech* (2012): 148-173.